

대학원 생화학과(생화학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제정 2013.2.22.]

제 1차 개정 2014.11.07.

제 2차 개정 2015.01.2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15학년도 생화학과(생화학전공)(이하 “학과”라고 한다)입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5학년도 생화학과 이전의 화학·생화학과 및 생화학과로 입학한 생화학전공 학생에게도 모두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4항의 논문지도위원회관련은 학과 시행세칙 제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응시절차)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과목)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생화학 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기준)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④(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합격기준)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7.)

1. TEPS 476점 이상
 2. TOEIC 600점 이상
 3. TOEFL (CBT) 163점 이상
 4. TOEFL (iBT) 57점 이상
 5. 국제언어교육센터에서 영어 관련 강좌를 60시간 이상 이수
- ②외국인 학생의 경우 본 규정 제5조 ①항의 영어 성적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5.1.27.)
1.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2. 충남대학교 국제언어교육센터, 충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한국어 관련 강좌 60시간 이상 이수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4.9.)

②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4.9.)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3.4.9.)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3.4.9.)(개정 2013.4.22.)

⑤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발표 후 별지 제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신설 2013.4.9.)

⑥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4.9.)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2008년 2월 이후 박사학위과정 입학자의 경우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 1편(게재승인 포함)을 포함한 학진등재(후보)지 이상의 논문 2편 이상의 발표가 요구된다.(신설 2013.4.9.)(개정 2014.11.7.)

②청구논문 접수 시 별지 제3호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나 게재승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신과 함께 제출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11.7.)

③2008년 2월 이후부터 2015년 2월까지의 화학·생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자의 경우 소급 적용하여, 본 규정 제7조 1항 규정에 따른다. 단, 2008년 2월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신설 2014.11.7.)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거친 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11.07.)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이전 입학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부 칙(2015.1.27.)

이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 5조 외국어능력 기준 규정은 2015학년도 후기 입학자(재입학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

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예정자	학번		성 명	
논문지도 위원	소속	직 위	성 명	위 원 (위원장)

위와 같이 논문지도위원회 구성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서명)

지도교수 _____ (인,서명)

생화학과전공 주임교수 귀하

※ 작성요령

1. 대상 :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박사학위 과정 학생
2.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함
3.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함

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20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
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 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충남대학교대학원장 귀하

